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794
----------	-------

발의연월일 : 2023. 12. 7.

발 의 자 : 오영환 · 이개호 · 이병훈
소병철 · 김병기 · 김성주
송갑석 · 민병덕 · 이성만
최기상 · 강준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청장 등 소방관서장이 화재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소방공무원 등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소방공무원인 화재조사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화재 발생 시 소방공무원의 화재 진압과 화재조사가 종결된 이후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화재사고인지 확인하고, 손해액을 평가하는 등 민간에서 화재에 대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이에 대한 자격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관서장이 아닌 사람이 화재의 원인, 화재로 인한 피해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화재사실조사를 하려는 경우 소방청장으로부터 화재사실조사 자격증을 발급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화재사실조사 자격 및 자격증의 발급 등) ① 소방관서장이 아닌 사람이 화재의 원인, 화재로 인한 피해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이하 “화재사실조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소방청장으로부터 화재사실조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재사실조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사실조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가. 화재조사와 관련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나.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화재조사와 관련한 국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화재사실조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화재사실조사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사실조사 자격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은 화재사실조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 하여서도 아니 된다.

⑤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화재사실조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재사실조사 자격증을 발급 받은 경우
2. 제4항을 위반하여 화재사실조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화재사실조사 자격시험 실시방법,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격증 없이 화재사실조사를 실시한 사람
6. 제2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0조의2(화재사실조사 자격 및 자격증의 발급 등) ① 소방관 서장이 아닌 사람이 화재의 원인, 화재로 인한 피해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이하 “화재사실조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소방청장으로부터 화재사실조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u> <u>②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재사실조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u> <u>1.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사실조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u> <u>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u> <u>가. 화재조사와 관련한 국가</u>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나.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화
재조사와 관련한 국제 자
격증을 소지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화재사실조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화
재사실조사 자격증을 잃어버렸
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행
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사실조사 자격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은 화재사
실조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
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⑤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화재사실조사 자격증을 발급받
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화재사실조사 자격증
을 발급받은 경우
2. 제4항을 위반하여 화재사실

제2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u><신설></u>	<u>조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u>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화재사실조사 자격시험 실시방법,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벌칙)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u>자격증 없이 화재사실조사를 실시한 사람</u> 6. 제2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u>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u>
---	--